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성형외과치료법

주체 105(2016)년 11 월 23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418 호로 채택  
주체 108(2019)년 6 월 23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62 호로 수정보충  
주체 113(2024)년 2 월 6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53 호로 수정보충

### 제 1 조 (성형외과치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형외과치료법은 성형외과치료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성형외과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성형외과치료의 정의)

성형외과치료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주로 몸겉면과 그 가까이의 조직과 기관에 생긴 선천성 및 후천성형태이상과 일부 기능장애들을 외과적방법으로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켜주거나 병적상태가 아니지만 외모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치료이다.

### 제 3 조 (성형외과치료발전원칙)

인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온갖 치료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는데 복무하는 성형외과치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 제 4 조 (성형외과치료기술, 설비의 현대화)

성형외과치료기관은 성형외과치료기술과 설비, 의료기구, 재료, 약물 같은것을 부단히 현대화하며 선진적인 성형외과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 제 5 조 (과학연구사업, 인재양성)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성형외과치료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성형외과치료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성형외과치료부문에 필요한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 **제 6 조 (성형외과치료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성형외과치료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의료기구와 재료, 약물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 7 조 (성형외과치료사업에 대한 지도)**

성형외과치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성형외과치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 8 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성형외과치료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 9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성형외과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일군,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공민에게 적용한다.

#### **제 10 조 (다른 법과의 관계)**

성형외과치료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인민보건법, 의료법을 비롯한 해당 법에 따른다.

#### **제 11 조 (성형외과치료대상)**

성형외과치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선천성기형을 고치기 위하여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
2. 연부조직의 외상, 화상, 종양, 염증성질병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외모변형, 결손을 고치기 위하여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

3. 정형외과부문의 외상환자들속에서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

4. 연부조직의 외상, 화상, 종양, 염증성질병 등에 의한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

### **제 12 조 (금지사항)**

다음의 성형외과치료행위는 할수 없다.

5. 얼굴모습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는 성형외과치료

6. 지문을 바꾸는 성형외과치료

7.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 성을 전환하는 성형외과치료

8. 눈썹부위, 속눈썹부위에 입목을 하는것을 비롯하여 외모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하는 성형외과치료

### **제 13 조 (성형외과치료기관)**

성형외과치료는 성형외과전문병원과 중앙급병원, 도급병원의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해당과에서 한다.

성형외과치료기관은 성형외과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의료설비와 기구, 의약품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

합동수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형외과치료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장소에서 성형외과수술을 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 14 조 (성형외과치료자격)**

성형외과치료는 성형외과전문가자격을 가진 의료일군만이 한다.

성형외과전문가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형외과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성원은 성형외과치료를 할수 없다.

### **제 15 조 (성형외과치료를 위한 진단)**

성형외과치료기관은 성형외과치료를 받으려는 환자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진행한 다음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확정된 진단은 병력서에 기록하며 환자에게 알려준다.

#### **제 16 조 (성형외과치료환자의 준비)**

성형외과치료기관은 성형외과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가 불안감을 없애고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가할수 있도록 준비를 잘 시켜야 한다.

#### **제 17 조 (성형외과치료방법)**

성형외과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치료방향을 정확히 세우고 치료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다음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한다.

치료내용은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제 18 조 (환자에 대한 정성)**

의료일군은 성형외과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

#### **제 19 조 (환자치료문건)**

성형외과치료기관은 병력서, 진단서, 처방전 같은 환자치료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환자치료문건의 원본 또는 부분은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한다.

#### **제 20 조 (감독통제)**

성형외과치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사회주의보건정책의 요구에 맞게 성형외과치료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 **제 21 조 (물수)**

비법적으로 성형외과치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자재, 도구,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을 몰수한다.

### **제 22 조(경고, 엄중경고처벌)**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지 않거나 병력서, 진단서, 처방전 같은 환자치료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 **제 23 조 (무보수로동처벌)**

이 법 제 12 조를 어겼거나 성형외과치료를 무책임하게 하여 의료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 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 **제 24 조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성형외과치료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 25 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 26 조 (시행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53 호 [주체 113(2024)년 2 월 6 일]로 수정보충한 성형외과치료법은 주체 113(2024)년 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